

운송사업 변경(구조변경)허가 처리지침

I. 변경허가 대상 구조변경 내용

-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구조변경
-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동일 유형내에서의 세부 용도 변경

II.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

□ 변경허가 대상

- 일반형·밴형·덤프형 또는 특수용도형<노면청소용·청소용·살수용·유류수송용·화학물질 수송용(탱크로리)·냉장냉동용·자동차수송용 제외> 화물자동차 상호간에 유형변경을 수반하는 구조변경
- 일반형·밴형·덤프형 화물자동차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<노면청소용·청소용·살수용·유류수송용·화학물질 수송용(탱크로리)·냉장냉동용·자동차수송용>로 유형변경을 수반하는 구조변경
-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 노면청소용·청소용·살수용·소방용·유류수송용·화학물질 수송용(탱크로리)·냉장냉동용·자동차수송용 상호간의 구조변경

□ 변경불허가 대상

-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 노면청소용·청소용·살수용·소방용·유류수송용·화학물질 수송용(탱크로리)·냉장냉동용·자동차수송용을 다른 특수용도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구조변경

-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 노면청소용·청소용·살수용·소방용·유류수송용·화학물질 수송용(탱크로리)·냉장냉동용·자동차수송용을 다른 유형(일반형·밴형·덤프형)의 화물자동차로 구조변경

III. 특수자동차의 구조변경

□ 변경허가 대상

- 구난형(렉카) 또는 특수작업형(고소작업차, 사다리차 등) 특수자동차 상호간에 유형변경을 수반하는 구조변경
-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다른 특수용도의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(사다리차등 ↔ 고소작업차 등)로 구조변경
- 견인형 특수자동차(트랙터)를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유형변경을 수반하는 구조변경

□ 변경불허가 대상

-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유형변경을 수반하는 구조변경

IV.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사항 기재내용(예시)

- 변경전 : 일반형 화물자동차(카고),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(탱크로리)
- 변경후 :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(내장 탑차),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(곡물사료차)

V. 처리절차

-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(운송사업자) → 예비 변경허가 → 변경허가사항(구조변경) 확인 → 변경허가